성동구

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

- 1. 2016년 제4차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(2016. 05. 18) 및 자치행정과-10901 (2016. 05. 19)호, 공원녹지과-6440(2016. 05. 23)호와 관련 됩니다.
- 2. 2016년 제4차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및 용도 변경된 공유 재산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제2조(공유재산의 관리),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(공유재산·물품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지정), 제3조(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)에 의거 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- 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 내역 -

(단위: m²)

재산의 표시			변 경 전		<u>H</u>	변 경 후		
지번	지목	면적	재산분류	재산관리관	용도	재산분류	재산관리관	용
옥수동 563	대	662	행정재산	자치행정과	옥수동 동청사	일반재산	재무과	대지
용답동 234-1	공원	1,653	행정재산	공원녹지과	공원	행정재산	도시계획과	일반업무시설

붙 임: 2016년도 제4차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심의 의결에 대한 결정 공문 1부. 끝.

